

수 습 분 야

1. 법률이론
 - 가. 일반법 분야
 - 나. 전문 및 특별법 분야
 - 다. 외국법
2. 법률실무
 - 가. 변호사실무
 - 나. 민사재판실무
 - 다. 형사재판실무
 - 라. 검찰실무
 - 마. 전문분야
3. 법조윤리
4. 법학인접분야
5. 일반교양
6. 기타 사회발전에 대처하는 새로운 분야